

『학칙 제8조 및 제9조』

제8조 (수업 및 재학연한) ①각 대학, 학과(부)의 수업연한은 3.5년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학과 및 학생은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다.(개정 2012.11.16)

1. 간호학과, 응급구조학과, 작업치료학과, 물리치료학과, 외식조리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,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언어치료전공의 소속 학생(학과명 변경 시 학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변경된 학과명으로 적용 한다)
2. 기타 복수학위과정(2+2 복수학위로 확정된 신입학생 및 협약입학한 외국인 유학생), 학군단선발확정 학생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

②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④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처리한다.

⑤편입학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9조 (조기졸업) ①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(0.5년) 단축하여 조기졸업할 수 있다.(개정 2012.11.16)

②조기졸업이라 함은 통상 12학기말(3학년 겨울학기)까지(수업연한 3.5년 적용 학생) 또는 13학기말(4학년 1학기)까지(수업연한 4년 적용 학생) 학칙에 의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.(개정 2012.11.16)

③조기졸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조기졸업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9조에 의거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 및 정의) 조기졸업이란 학칙 제9조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조기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본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4조(신청자격)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학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학기 취득예정학점을 가산하여 학칙 제29조에서 정한 졸업학점을 충족 할 수있는 자 로서, 소속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2. <삭제>2012.9.7.

제5조(대상자 선정)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제4조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소속 학부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자격상실)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학칙 제54조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
2. 학칙 제22조 제2항에 의해 휴학한 학생
3. 조기졸업을 포기한 학생

제7조(조기졸업 사정기준) ①조기졸업의 사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조기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학칙 제29조에서 정한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전학년 평점평균이 4.25 이상인 자.
2. <삭제>2012.9.7
3. <삭제>2012.9.7

②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다음 학기로 졸업을 연기 할 수 있다. ③조기졸업 대상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후 본조 1항의1에서 정하는 평점평균에 미달하거나, 본 대학 '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'에 의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졸업을 할 수 없을 경우 4학년 1학기에 최소 2학점 이상 최대 18학점까지 수강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조기졸업 사정시기) 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해당

학기의 졸업사정 기간(1학기 신청의 경우 여름학기 포함, 2학기 신청의 경우 겨울학기 포함)에 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①조기졸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 ②2010년 현재 4학년 재학생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.(2011.8.1.)

부칙(2010.06.01)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2010학년도 현재 3학년 이하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9.7.)

제1조(시행일) 변경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12.6.1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단, 2011년 10월 이전에 편입한 외국인 유학생은 개정 전(2012.6.18. 기준) 규정을 적용한다.(개정: 2012.11.19.)